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5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급망 안정화 시행계획에 경제안보품목의
비축 등에 관한 연차별 추진계획 포함〉
■ 이재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20286호)

2026. 9.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유인규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시행계획에 경제안보품목의 비축 등에 관한 연차별 추진계획 포함 (안 제8조제2항)	2
IV . 입법의 재정영향	10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재관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6. 7. 30.

다. 회 부 일 : 2026. 7. 3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매년 공급망 안정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제안보품목의 비축 및 수입처·공급처의 다각화에 관한 사항이 시행계획에 명시적으로 반영 되도록 하는 규정은 미흡한 측면이 있음.

최근 전쟁 장기화와 각국의 수출 통제 등으로 공급망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경제안보품목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비축 및 수입처·공급처의 다각화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소관 경제안보품목의 비축 및 수입처·공급처의 다각화에 관한 연차별 추진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공급망 불안정 상황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Ⅲ. 검토의견

1. 시행계획에 경제안보품목의 비축 등에 관한 연차별 추진계획 포함 (안 제8조제2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8)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소관 분야에 대한 공급망 안정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공급망 안정화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신 설> ②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8) ① (현행과 같음)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에 <u>“소관 경제안보품목의 비축 및 수입처·공급처의 다각화에 관한 연차별 추진계획”</u>을 포함 ③ (현행 제2조와 같음)

개정안은 현행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체계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소관 경제안보 품목의 비축 및 수입처·공급처 다각화에 관한 연차별 추진계획을 포함 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재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 안정화법」”)은 공급망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공급망의 원활한 작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3년마다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¹⁾,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1)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정부는 국가 및 국민의 안정적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공급망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공급망의 원활한 작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3년마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매년 소관 분야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음²⁾.

구체적으로, 현행법 제7조는 정부가 3년마다 수립하는 공급망 안정화 기본 계획에 경제안보품목등의 지정·관리, 국내외 수급 동향, 공급망 위기에 대비한 시책과 함께 생산기반 조성, 구입처 등 다변화, 비축, 기술개발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 제8조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서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그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를 통한 경제안보 강화를 위하여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2025~2027)」을 수립하고, 2025년과 2026년에 각각 「공급망안정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였음.

이 중 경제안보품목의 비축 및 다각화와 관련하여 「제1차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은 공공비축 고도화, 해외 공급망 구축 등을 세부 추진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며, 「2025년 공급망 안정화 시행계획」에서는 부처별 차년도 비축계획 및 예산 요구안 마련, 차량용 요소의 제3국산 수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2026년 공급망 안정화 시행계획」에서는 부처별로 소관 경제안보품목에 관한 공공비축 고도화 및 공급망 관련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³⁾

2)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소관 분야에 대한 공급망 안정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제10조에 따른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제안보품목의 비축·다각화와 관련된 현행 계획과 개정안 비교]

구분		주요내용
현행	법률	- 기본계획: 3년 단위 수립, 아래 사항을 포함 ① 경제안보를 위한 경제정책의 기본방향 ②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기본 사항 ③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중·장기 목표 및 추진 방향 ④ 물류·유통·금융 등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관한 시책 ⑤ 공급망 관련 국제정세, 국제교역, 외국정부의 정책 변화 등 동향 ⑥ 경제안보품목등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⑦ 경제안보품목등의 국내외 수급 동향 ⑧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⑨ 공급망 위기에 대비한 시책 ⑩ <u>생산기반 조성, 구입처 등 다변화, 비축, 기술의 도입·개량·개발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u> ⑪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국제협력 ⑫ 그 밖에 경제안보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시행계획: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소관 분야별로 수립·시행
	제1차 기본계획(2025-2027)	경제안보품목의 공공비축 고도화, 국내 생산기반 확충, 해외 공급망 구축 등의 분야를 세부 추진과제로 제시
	2025년 시행계획	비축·다각화 관련 개별 사업·과제 추진 (차년도 비축계획 및 예산 요구안 마련, 공급망 중소기업 육성 추진계획 마련, ‘차량용 요소’ 등 특정국 고의존 품목 제3국 수입 지원 등)
	2026년 시행계획	부처별 소관 경제안보품목에 관한 공공비축 고도화 및 공급망 관련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개정안		<u>경제안보품목의 비축 및 수입처·공급처 다각화에 관한 연차별 추진계획을 시행계획에 의무적으로 포함</u>

자료: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 및 2025년
· 2026년 공급망 안정화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작성

- 3)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2025~2027)」 및 「2025년 공급망안정화 시행계획」은 현재 재정경제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있으나, 「2026년 공급망안정화 시행계획」의 경우 경제안보품목, 비축기관 등 비공개가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재정경제부는 해당 부분을 제외한 자료만 제출하였음.

현행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서도 경제안보품목의 비축 및 수입처·공급처 다각화 관련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현행 시행계획에는 관련 사업·과제가 개별적으로 포함되어 있을 뿐, 소관 경제안보품목의 비축 및 수입처·공급처 다각화에 초점을 맞춘 체계적인 연차별 추진계획이 별도로 수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경제안보품목의 공급망 위험은 국제정세 및 국내외 수급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이 경제안보품목의 비축 및 수입처·공급처 다각화에 관한 정책을 연차별 추진계획으로 체계화하여 정책의 지속성 및 체계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이러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법률상 시행계획의 필수사항으로 직접 규정할 것인지 여부는 현행 계획체계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기본계획에 공급망 안정화 전반에 관한 중·장기 목표 및 추진방향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생산기반 조성, 구입처 등 다변화, 비축, 기술개발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주요 지원수단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반면,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기본계획의 내용을 연도별·소관 분야별로 구체화하여 시행하는 성격을 가지나, 시행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법률에서 별도로 열거하고 있지 않음.

[현행법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규정]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정부는 국가 및 국민의 안정적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공급망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공급망의 원활한 작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3년마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경제안보를 위한 경제정책의 기본방향
2.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기본 사항
3.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중·장기 목표 및 추진 방향
4. 물류·유통·금융 등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관한 시책
5. 공급망 관련 국제정세, 국제교역, 외국정부의 정책 변화 등 동향
6. 제13조에 따른 경제안보품목 및 경제안보서비스(이하 “경제안보품목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경제안보품목등의 국내외 수급 동향
8. 제15조에 따른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9. 공급망 위기에 대비한 시책
10. 국내외 생산시설 투자 확대 등 생산기반 조성, 구입처 등 다변화, 비축, 기술의 도입·개량·개발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재원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1.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국제협력
12. 그 밖에 경제안보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⑦ (생략)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소관 분야에 대한 공급망 안정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제10조에 따른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러한 현행 계획체계에서 생산기반 조성, 비축, 다변화, 기술개발 등 다양한 공급망 안정화 정책수단 가운데 경제안보품목의 비축 및 수입처·공급처 다각화에 관한 연차별 추진계획만을 시행계획의 법정 포함사항으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정책수단과의 규정상 균형 및 기본계획·시행계획 간 체계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편, 경제안보품목의 비축 및 수입처·공급처 다각화를 별도로 체계적으로 계획·관리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를 법률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개정안과 같이 별도의 연차별 추진계획을 시행계획의 필수사항으로 규정하는 방식 외에도, 기본계획의 포함사항에 “경제안보품목의 비축 및 수입처·공급처 다변화⁴⁾에 관한 중·장기 목표 및 추진방향”을 추가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이를 매년 시행계획을 통해 구체화·시행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는 공급망 안정화 전반에 관한 중·장기 목표 및 추진방향을 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현행 계획체계를 유지하면서도 경제안보품목의 비축 및 수입처·공급처 다각화에 관한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참고로, 재정경제부는 현행법 제7조 제4항제10호가 기본계획 수립 시 다변화 및 비축을 포함한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지원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⁵⁾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

4) 개정안은 연차별 추진계획의 대상으로 “소관 경제안보품목의 비축 및 수입처·공급처의 다각화”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 제7조제4항제10호에서는 유사한 의미로 “구입처 등 다변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따라서 법률용어의 통일성 및 현행 법문언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하여 개정안의 “다각화”를 “다변화”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획 및 공급망 관련 계획 등과 연계하여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현행 법령 체계 내에 개정안의 개정사항이 이미 규정되어 있어 개정 실익이 크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보완하여 경제안보품목의 비축 및 수입처·공급처의 다각화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할 수 있다는 입장임.

5)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3조(공급망 안정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공급망 관련 계획 등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illegible]

IV. 입법의 재정영향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되었으나, 국회예산정책처는 동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부담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를 제출하였음⁶⁾.

문 의 처
02)6788-5148

6)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는 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법안뿐만 아니라 재정지출이 순감소 또는 재정수입이 순증가하는 경우와 같이 재정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 법안도 포함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 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 29)

참고 1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2025-2027) 상의 세부추진과제 (요약)

2027년까지 “55조원 + α” 재정·금융지원 추진			
경제안보 품목 수급 안정	품목 지정취약성 점검 - 세부지표 체계화 - 목록 수시 갱신 - 등급별 취약성 점검 - 고위험품목 위기대응 계획 마련	+	EWS 고도화 - 부처·기관별 EWS 연계 위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EWS 운영지침 마련 - 국·내·외 정보네트워크 연계·활용 및 재외공관 EWS 연계 협력
		+	위기대응체계 확립 - 합동 모의훈련 실시 - 긴급수급조정조치·매점 매석 위반 처벌근거 마련 - K-공급망 자원물류망 구축 - 위기시 긴급수급조정조치 긴급조달·협동판매 신속 적용 추진
	공급망 회복력 강화	+	공공비축 고도화 - 공공비축 선정·해제 기준 마련 - 공공비축 목표 설정 - 타스비축·민간비축 확대를 위한 재정·금융 지원 방안 검토 - 비축기지 현대화·권역화 및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준공
		+	국내생산기반 확충 - 공급망 안정화 기술 관련 세제지원 확대 - U턴/외투/지투 보조금 및 금융지원 확대 - 공급망안정화 지원 프로그램 도입 - 공급망 완결형 협력 모델 10개 이상 발굴 - 핵심광물 재자원화 규제개선 방안 마련
경제안보 기반 고도화	+	+	해외공급망 구축 - 특정국 高의존 품목에 대해 수입단가 차액 또는 운송비 지원 - 민관합동 핵심광물 투자 협의회 구축 - 공급망기금이 핵심광물 관련 직접·간접 투자 등 민관 공동투자 추진
	공급망 인프라 강화 (해운) 해운공급망 분석·신규 항로 개설 지원 (항공) 물류인프라 현대화·항공 네트워크 다변화 (사이버보안) 거버넌스 구축 및 SBOM 도입	+	핵심기술 강화·보호 - 공급망, 경제안보 핵심기술 R&D에 3년간 25조원+α 지원 - 핵심기술 관리 및 유출시 처벌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추진
글로벌 공급망 內 위상 확립	+	+	양다자 공급망 협력 네트워크 강화 - SCPA 체결을 통한 공급망 양자협력 강화 - IPEF 이행기구를 통한 협력 강화 및 위기시 대응 공조 - MSP 의장국으로서 주요사업 활성화 및 신규 사업 확대 - 국제금융기구 신탁기금을 활용한 개도국 공급망 역량강화 지원
	공급망 안정화 대외전략 수립 - 자원부국의 對한국 高의존 품목 식별을 통한 쌍방향 협력 체계 구축 - 경제동반자협정(EPA)·조기타결 등 통상정책과 공급망 정책간 연계 - ODA 전략적 활용 및 K-Finance Package 적극 추진		거버넌스 (공급망추진, 공급망 3법, 민관협력체) + 금융·재정지원 (공급망안정화기금, 소부장특별회계)

2-[1]-1-①-③

품목별 비축계획 수립 및 비축방식 모색

1.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

- (공공비축 통합관리) 비축품목 선정·해제기준 마련, 비축방식 다양화 등을 포괄하는 공공비축 통합관리체계 구축
 - 분야별 비축기준을 토대로 비축주체별로 품목별 비축계획 수립, 비축방식을 모색하고 비축전문위원회를 통해 범정부시각에서 종합 검토
 - 부처별 차년도 비축계획 및 예산요구안을 마련(1~2월)하여 비축전문위원회 사전논의(3~4월) 후 기재부(예산실) 제출
 - 타소비축* 등 비축방식을 다양화하고, 비축물품의 가격 급등에 대비한 제도개선**도 추진
- * 장기보관이 어려운 요소 등을 조달청이 구매, 수요기업이 보관 및 재고 순환
- ** 단건 구매방식 외 연간공급계약 도입 등

2. 2024년 추진실적

- 공급망 위기 시에도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해 연간 공급계약 시범 도입(조달청)

3. 2025년 시행계획

- 부처별 '26년 비축계획 수립* 및 비축예산 요구안 마련(~4월)
 - 비축전문위원회 사전 논의(5월 초) 후 기재부(예산실) 제출
 - * 비철금속, 핵심광물, 석유 등
- 공급망 위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알루미늄, 구리, 주석에 대해서도 연간 공급계약 방식 확대 추진(조달청)

1.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

- ☐ (공급망 중소기업 육성) 공급망 품목·서비스 등 전분야에 걸친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지원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추진계획(안) 마련(~'25) →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26~'28) 수립시 반영

2. 2024년 추진실적

- ☐ 해당 없음

3. 2025년 시행계획

- ☐ 공급망 중소기업 육성 추진계획(안) 마련
- 중소기업 협단체, 중소기업연구원 등 관련기관 간담회
 - 중소기업 현장의견 수렴
 - 공급망 중소기업 육성계획 마련을 위한 용역 추진

1.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

□ (제3국 수입지원)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제3국산 수입분에 대한 금융·재정 지원 및 대체 수입처 발굴을 위한 컨설팅 지원 강화

-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고, 국내 수급불안 가능성이 높은 경제안보품목은 수입단가 차액* 또는 운송비 지원**

* (예) 차량용 요소 중국 이외 제3국에서 장기계약시 수입단가 차액의 50% 보조(25년)

** (예) 원유: 非중동 지역에서 수입시 운송비 일부를 석유수입부과금에서 환급(~27년)

2. 2024년 추진실적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中 수출통제에 따라 국내 수급이 불안정한 '차량용 요소'에 대해 中 외 제3국산 운송비 차액 50% 보조

3. 2025년 시행계획

□ '차량용 요소' 제3국산 차액 보조 사업을 운송비 → 수입단가 차액 보조(보조율 50%)로 확대·개편

- '공급망 안정화 지원 프로그램' 신설 등으로 대상 품목 확대 추진